

[별표 21]

수입돼지간장추출물의 검역방법(제34조 관련)

1. 검역대상: BSE 관련품목의 간장추출물 중 돼지간장추출물(의약품원료용)
2. 검역장소: 검역창고 또는 보세장치장
3. 대상국가: BSE 관련국가(일본 등 36개국)
4. 검역방법
 - 가. 검역증명서에 다음사항이 증명된 경우에는 BSE 관련품목에서 제외한다.
 - 해당 품목의 원료 유래가 비반추 동물임
 - 돼지 간장추출물 전용 제조시설에서 처리되었음
 - 제조 공정상 BSE 관련 물질과 교차오염이 되지 않았음
 - 해당 품목의 원료 유래 돼지는 도축전 BSE에 오염된 사료를 급여하지 않았음
 - 제품의 용도는 의약품원료용임
 - 나. 현물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.